

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!

성북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선금지급 결정안내(삼선동1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)

1. (주)도시건축집단 아름 선금요청(2015.1.9) 관련입니다.
2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행자부예규 제3호(2015.01.05)에 의거 지급결정 사항을 통보 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사용제한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리부서에서는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가. 용역명 : 삼선동1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

나. 계약상대자(분담이행)

- (주)도시건축집단 아름
- (주)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

다. 계약금액 : 금119,080,000원(금일억일천구백팔만원)

- (주)도시건축집단 아름 : 금59,540,000원(금오천구백오십사만원)
- (주)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: 금59,540,000원(금오천구백오십사만원)

라. 신청금액 : 금47,632,000원(금사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)

- (주)도시건축집단 아름 : **금23,816,000원(금이천삼백팔십일만육천원)**
- (주)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: **금23,816,000원(금이천삼백팔십일만육천원)**

마. 선금의 사용제한

- 수령한 선금을 당해용역계약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등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
-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
- 선금잔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(단, 보증기관 수락등 절차에 의한 양도시는 가능)
-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.

다만,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 상당액(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)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

- 기타 용역계약특수조건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바. 선금 정산서류 제출 : 전액 사용시 제출

사. 서류 제출 : 선금청구서, 세금계산서, 선금보증서 제출. 끝.

성북구청장

수신자 주거정비과장, (주)도시건축집단 아름, (주)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

주무관 **황문호** 계약담당 **김진철** 재무과장 **이기석** 기획경제국장 01/09
전성용

협조자 지출담당 **최종인**

시행 재무과-504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41200234023 / 전송 0241200776557 / hopoya@sb.go.kr / 대시민공개